

# Part 10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단 · 원 · 열 · 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매년 2문제가 출제되며, 정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대상 및 실시시기, 실시기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01 총 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등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02 시설물의 안전관리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2.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3. 안전점검 등의 대행 등

#### 03 시설물의 유지관리

1. 시설물의 유지관리
2. 시설물의 성능평가

#### 04 한국시설안전공단

1. 설립
2. 지도·감독·점검

#### 05 보 칙

1.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2. 사고조사 등
3. 권한의 위임 등
4. 비밀유지의 의무
5.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 01 총 론

#### 1 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 2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법 제2조).

#### (I) 시설물

##### 1) 시설물의 구분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①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㉕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㉖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②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㉑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㉒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㉓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㉔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㉕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㉖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㉗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 건축물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대통령령 별표 1)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건축물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sup>m</sup> ² 이상의 건축물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sup>m</sup> ²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 <sup>m</sup> ²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 시설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sup>m</sup> ²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연면적 1만 <sup>m</sup> ²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5천 <sup>m</sup> ²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3.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4.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 ③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2)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 2) 제3종 시설물의 지정과 해제

### ① 의무적 지정과 해제

- ㉠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1항, 영 제5조 제1항).
- ㉡ 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해소되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2항, 영 제5조 제1항).

### ② 지정 및 해제요청

-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하여야 한다(영 제5조 제2항·제4항).

- ㉠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공공관리주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나.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 시·도지사
- ㉡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지정권자에게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영 제5조 제3항·제4항).

(2) 관리주체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① 공공관리주체: 공공관리주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 ㉠ 국가·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민간관리주체: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3)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① 안전점검: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다.

③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다.

④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⑤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내용**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개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4) 내진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도급, 하도급**

- ① **도급**: 도급(都給)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② **하도급**: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6) 유지관리**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7) 성능평가**

성능평가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본계획 등**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본계획**

- ① **내용**: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법정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5조 제2항).

- ②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 제5조 제1항).
- ③ **수립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5조 제3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 ① **수립**: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시설물별로(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단지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3종시설물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다음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1항·제2항·제3항, 영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

-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물

**② 보고·제출**

- ㉠ **공공관리주체가 수립한 경우**: 공공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4항, 규칙 제3조 제1항).

- ㉡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도지사

- ㉣ **민간관리주체가 수립한 경우**: 민간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5항, 규칙 제3조 제1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내용(법 제6조 제2항)**

1. 시설물의 적절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 ㉔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3조 제3항).
  - ㉕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제출현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6항, 규칙 제3조 제4항).
  - ㉖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거나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공공관리주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출 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7항, 규칙 제3조 제5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시설물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①의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법 제6조 제8항).

### (3) 중기관리계획

- ① 수립: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소관 시설물별로 5년마다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중기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영 제3조 제4항).
- ② 중기관리계획의 제출: 공공관리주체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기관리계획을 해당 시설물의 성능평가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마다 2월 15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3조 제2항).
- ③ 관리주체가 중기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3조 제3항).

### (4) 설계도서 등의 제출

- ① 제출: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다음의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위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1항·제2항, 영 제6조).

#### ㉞ 중기관리계획의 내용 (영 제3조 제5항)

1. 성능평가대상시설물에 대한 성능목표 및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 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3.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 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 등”이라 한다),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이행에 관한 사항
4.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구 분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설계도서 등	㉠ 준공 도면 ㉡ 준공 내역서 및 시방서 ㉢ 구조계산서 ㉣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준공 도면(준공 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 도면)
시설물관리대장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시설물 관리대장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시설물 관리대장
감리보고서	최종감리보고서	

② 관리주체는 다음 부분의 보수·보강을 실시한 경우 ①에 따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4항, 영 제7조).

- ㉠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 ㉢ 그 밖에 다음의 주요 부분(규칙 제7조)
  - ㉠ 교량받침
  - ㉡ 터널의 복공 부위
  - ㉢ 하천시설의 수문문비
  - ㉣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 ㉤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 ㉥ 상수도 관로이음부
  - ㉦ 항만시설 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구조체

③ 서류 등 제출시기: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보수·보강을 실시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①과 ②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서류제출의 무자가 서류의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규칙 제6조).

서류의 종류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설계도서 등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다만, 위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보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 다만, 위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보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설물관리대장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 후 3개월 이내	

④ 보관: 관리주체는 ①과 ②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시설물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5항).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법 제4조).

#### 비 고

1. “안전등급”이란 제12조 및 별표 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등급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같음한다.

### 02 시설물의 안전관리

####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1) 안전점검

###### ① 안전점검의 구분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의 수준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영 제8조 제1항).

-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② 안전점검의 실시시기(영 제8조 제2항, 별표 3)

###### ㉠ 실시주기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 ㉡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 ㉔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 ㉕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

③ 안전점검의 생략

- ㉖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 ㉗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로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④ 안전점검의 실시

- ㉘ 관리주체에 의한 점검: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영 제8조 제4항).

- ㉙ (a)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 ㉚ (b)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㉛ 전문점검: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㉔ 시장·군수·구청장의 점검: 민간관리주체가 어음·수표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3항·제4항).

⑤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㉕ 실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제2항).

㉖ 합동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㉕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법 제13조 제3항).

㉗ 결과통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 제13조 제6항, 영 제11조 제2항).

㉘ 보고: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7항).

㉙ 사법경찰권: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법 제14조).

(2) 정밀안전진단

①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㉚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1항).

㉠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려는 경우에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영 제10조 제1항).

- ㉡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 ㉢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영 제10조 제3항).

②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 ㉤ 최초진단: 제1종시설물에 대한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영 제10조 제1항).
- ㉥ 정기진단: 관리주체는 완공 후 10년이 지난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이후에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영 제10조 제1항).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4년에 1회 이상

③ 안전점검과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2항).

#### ④ 내진성능평가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4항).

###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격 등

- ① **책임기술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영 제9조 제1항).
-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영 제9조 제2항). 이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영 제9조 제3항).

###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 ① **실시자의 보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해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제1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1항, 영 제13조 제2항).
- ② **제출**: 관리주체는 ①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13조 제3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②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4항).

(5)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①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법 제18조 제1항), 그 결과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관리주체,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및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 ② **보완**: 국토교통부장관은 ①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영 제14조 제3항).

(6) 비용부담

안전점검 등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법 제56조).

(7) 시설물의 안전등급의 지정

- ① **안전등급의 지정**: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 ② **안전등급의 변경**: 위 ①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2항).

-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출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의 확인 등 시설물의 보수·보강이 완료되어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그 밖에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상태변화 등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평가에 포함될 내용**  
(영 제14조 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전등급기준**

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8)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 ① 요청에 따른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 각 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1항).

### ② 실시대상

①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한다(영 제15조).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량
- ㉣ 「도로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하도 및 육교
- ㉤ 옹벽 및 절토사면. 다만,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 ㉥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 **결과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①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2항).

## (9) 안전점검 등의 지침

### ① 안전점검 등의 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방법·절차 등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1항).

### ② 안전점검자의 의무

안전점검 등을 하는 자는 ①에 따른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에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20조).

## 2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 (1)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통보

- ①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 부등침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1항, 영 제18조 제2항).

- ㉠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
- ㉡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 ㉢ 안전점검 등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 ㉣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내용
- ㉤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 ㉥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관리주체는 ①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2항).

### (2) 긴급안전조치

- ① **안전조치**: 관리주체는 (1)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1항).
- ② **안전조치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1)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법 제23조 제2항),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린 후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법 제23조 제4항·제5항).
- ③ 관리주체는 ① 또는 ②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3항).

#### 📖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란 (영 제18조 제1항)

1. 시설물기초의 세굴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3. 교량받침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6. 댐의 파이핑(piping) 및 구조적 균열
7.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8. 하천시설물의 본체, 교량 및 수문의 파손·누수·파이핑 또는 세굴
9.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10. 절토·성토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1.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전속대 행사항**

1. 다음의 교량
  - 가. 도로교량 중 상부구조형 식이 현수교(懸垂橋)·사장교(斜張橋)·아치교(arch橋)·트러스교(truss橋)인 교량 및 최대 경간장(徑間長) 50미터 이상인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나. 철도교량 중 상부구조형 식이 아치교·트러스교인 교량
  - 다. 고속철도 교량
2. 연장 1천미터 이상인 터널
3. 갑문시설
4. 다목적댐·발전용댐·홍수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인 용수전용댐
5. 하구둑과 특별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배수펌프장
6. 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용수공급능력이 100만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부대시설
7. 말뚝구조의 계류시설(10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8.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9. 다기능 보(높이 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시설물의 보수·보강**

- ① **관리주체의 조치**: 관리주체는 긴급안전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2)의 ①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1항, 영 제19조).
- ② **조치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①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항 및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①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2항, 제3항).

**(4) 위험표지의 설치 등**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대통령령(영 제18조 제1항)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누구든지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5조).

**3 안전점검 등의 대행 등**

**(1) 안전점검 등의 대행**

- ① **대행**: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1항).
- ②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26조 제2항).
- ③ ②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3항).

(2) 하도급의 제한

- ① **하도급의 금지**: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별표 10)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법 제27조 제1항, 영 제22조 제1항).
- ② **통보**: ①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2항, 영 제22조 제2항).
- ③ **사실조사의 요청**: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①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사의 결과 도급을 받은 자가 ①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의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3항·제5항).

-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 시·도지사
- ㉡ 유지관리업자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3) 안전진단전문기관

- ① **등록**
  - ㉠ **등록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제1항).
  - ㉡ **등록기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28조 제8항, 영 제23조 제1항 별표11).
  - ㉢ **등록증 교부 등**
    - ㉠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제2항).
    -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제3항).

- ㉑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법 제27조 제4항).
- ㉒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5항).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6항).
- ㉓ 등록결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법 제29조).

- 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㉕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㉖ 제3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㉗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㉘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㉙ 임원 중에 ㉔부터 ㉘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㉚ 청문: 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법 제32조).

### ② 명의대여 금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30조).

### ③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31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유지관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는 그 처분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관리주체는 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33조 제1항·제2항).

(4)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① 대행실적의 제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그 대행실적을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36조 제1항).

- ㉠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도지사
- ㉢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② 대행실적의 관리와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①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관리주체가 적절한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현황과 대행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법 제36조 제3항·제4항).

③ 행정처분의 현황보고

시·도지사는 매년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36조 제2항).

(5) 안전점검 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 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37조, 영 제26조).

## 03 시설물의 유지관리

### 1 시설물의 유지관리

#### (1) 유지관리 및 대행

- ① **관리주체의 직접 유지관리**: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 39조 제1항, 영 제27조).
- ② **유지관리의 대행**: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내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39조 제2항).

#### (2) 유지관리의 비용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법 제39조 제3항).

#### (3)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 ① **제출**: 관리주체는 (1)에 따라 유지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법 제41조 제1항, 영 제29조 제2항).

- ㉠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치 실적
- ㉡ 시설물 제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절차**: 관리주체는 유지관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41조 제2항, 영 제29조 제3항).

## 2 시설물의 성능평가

### (1) 성능평가의 대상 및 실시

- ① **실시**: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별표 13)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법 제40조 제1항, 영 제28조 제1항·제4항).
- ② **대행**: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40조 제2항).
- ③ **활용**: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실시한 현장조사·시험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영 제28조 제5항).

- ㉠ 성능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 ㉡ 성능평가를 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 (2) 성능평가의 결과보고 등

- ① **결과보고**: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40조 제3항·제4항, 영 제28조 제6항).

- ㉠ 관리주체가 설정한 시설물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 ㉡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 ㉢ 시설물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 ㉣ 시설물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 ㉤ 시설물의 종합성능에 관한 사항
- ㉥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
- ㉦ 그 밖에 시설물의 성능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유지관리·성능평가 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43조 제1항, 영 제30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업

1.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긴급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2. 시설물의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긴급안전점검 ·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에 관한 기술의 연구 · 개발 · 지도 및 보급
3. 시설물의 과학적 유지관리 체계의 개발
4. 시설물의 설계 · 시공 · 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자료의 발간 · 제공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자문 등의 기술 용역사업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 센터의 운영
8.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업

- ㉠ 유지관리 · 성능평가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 ㉡ 유지관리 · 성능평가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 ㉢ 유지관리 · 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 ㉣ 유지관리 · 성능평가 장비에 관한 사항
- ㉤ 유지관리 · 성능평가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 ㉥ 시설물의 성능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 ㉦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성능평가의 수준
- ㉧ 유지관리 · 성능평가의 항목별 점검 ·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 ㉨ 유지관리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유지관리 · 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성능평가의 비용**

- ① **비용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44조, 영 제31조).
- ② **비용부담**: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법 제56조).

**04 한국시설안전공단**

**1 설립**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 · 개발 ·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설립한다(법 제45조 제1항). 공단은 법인으로 하는데(법 제45조 제2항),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법 제45조 제3항).
- (2)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관(定款)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법 제46조 제1항), 공단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46조 제2항 전단).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46조 제2항 후단).

- (3)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법 제53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54조).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법 제47조).

-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자금은 다음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하며, 국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법 제48조, 제50조).

- ① 정부의 출연금
- ②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 ④ 차관(借款) 및 차입금(借入金)
-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 2 지도·감독·점검

### (1) 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장부·서·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법 제52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법 제52조 제2항).



## 05 보 칙

### 1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법 제55조 제1항),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법 제55조 제3항).

-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
- ②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 ③ 제9조 제7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 ④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⑤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⑥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⑦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 ⑧ 제28조, 제31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 ⑨ 제31조 제2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 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 ⑩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
- ⑪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 ⑫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 ⑬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산의 확보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법 제57조).

### 3 사고조사 등

(1)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법 제58조 제1항, 영 제37조).

- ①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져 재시공이 필요한 정도의 시설물피해
- ②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
- ③ ① 및 ②에서 규정한 피해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

(2) 사고발생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처의 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발생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58조 제2항).

#### (3)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은 (1)의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지도·감독하는 관리주체의 시설물에 붕괴·파손 등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58조 제4항·제5항·제7항).

#### (4) 실태점검

-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법 제59조 제1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등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법 제59조 제2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①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법 제59조 제3항).

### 3 권한의 위임 등

- (1)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 제60조 제1항).
- (2)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60조 제2항).

- ① 제12조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 ③ 제19조 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및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 ④ 제36조 제3항에 따른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 ⑤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 4 비밀유지의 의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61조).

### 5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법 제62조).

- 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직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를 하는 사람
- ② 제58조 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제58조 제5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제60조 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